

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7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광역자활센터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5조의10에 의거하여 설치·운영 중인 기관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
- 나. 현 수탁법인의 계약기간이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개요

- 사업명 :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
- 소재지 :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 2, 3층
- 설립일 : '10.11.9.
- 규모 : 728㎡(220평)
- 운영법인 : (사)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(회장 : 이용구)
- 운영인력 : 9명 (센터장 1명 외 8명)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2020.2.7.~2023.2.6.(3년)
- 위탁사무
 - 자활기업 창업·지원
 -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·창업 지원 및 알선
 -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
 -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·경영 지도
 - 기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
- 소요예산 : 2019년 기준 1,136백만원
(일반회계 548백만원, 기금588백만원)

다. 민간위탁 추진경위

- 최초 위탁
 - 위탁기간 : 2010.11.9. ~ 2013.11.8.
 - 위탁유형 : 예산지원형(시설형)으로 심의·등록
 - 선정방법 : 공모절차 추진 후 2회 유찰로 수의계약 체결
- 재계약 (재계약 1회)
 - 위탁기간 : 2013.11.9. ~ 2016.11.8.
 - 위탁유형 : 예산지원형(시설형)
 - 선정방법 : 재계약 적격자 심의
- 계약기간 연장
 - 연장기간 : 2016.11.9. ~ 2017.2.6.

○ 재계약 (재계약 2회)

- 위탁기간 : 2017.2.7. ~ 2020.2.6.

- 위탁유형 : 예산지원형(사무형)

- 선정방법 : 재계약 적격자 심의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(광역자활센터)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(수탁기관 선정)

마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서울지역 30개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, 자활근로사업단·자활기업에 대한 재무경영 컨설팅과 아이템 개발 등을 지원하고

○ 2개 자치구 이상의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광역단위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홍보·판로개척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

○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촉진 관련 전문성과 지역사회 복지 사업·자활지원 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(광역자활센터)

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,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법인등"이라 한다)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.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·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
2. 시·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·창업 지원 및 알선
3.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
4.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(광역자활센터의 지정)

① 법 제15조의10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(이하 "광역자활센터"라 한다)로 지정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·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정관의 사본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사업계획서

○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"광역자활센터"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-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자활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1. 창업지원 2. 취업지원 3. 교육훈련 4. 연구·조사활동
 5.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6.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제1항의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자활지원과 자활사업팀 이종열 (☎ 2133-7496)